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45

발의연월일: 2024. 11. 5.

발 의 자:문정복・김준혁・강선우

박상혁 · 송재봉 · 김주영

민형배 • 박홍배 • 박균택

진선미 · 김문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2023년 10월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현행법에 따라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 정의에 포함시키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를 개정함. 교육부는 동 규정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가 법적 지위를 얻었다고 밝힘.

그러나 헌법상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비춰볼 때, 교과용 도서라는 문언적 의미와 우리 법체계에서 도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를 넘어서서 입법자의 명시적 위임 없이 일종의 소프트웨어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 법률에서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그 범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않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최근 한 추계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학생용 구독료로 약 4조 7,25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의 부담과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이밖에 학생의 문해력 하락, 디지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등 전문가와 교사, 학부모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바 국회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관하여 명확하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과용 도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교육 자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라고 밝힌 대통령령의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 제목 "(교과용 도서의 사용)"을 "(교과용 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을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으로 한다.

- ① "교과용 도서"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자료 중 국가가 저 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것을 말한 다.
-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
-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영상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이하 "전자책"이라 한다)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과용 도서의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전자책을 사용함으로써 교 과서 또는 지도서의 사용을 대신할 수 있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교육 자료"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 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 자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용 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중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자료로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를 "도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 ②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 중 "교재 및"을 "교육"으로 한다.
- ③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용"을 각각 "교육"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신 |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교과용 |
| <u>설></u> | 도서"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 | 교육 자료 중 국가가 저작권을 |
| |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 |
| | 정하거나 인정한 것을 말한다. |
| |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
| |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 |
| | <u>용의 도서</u> |
| |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
| |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 |
| | <u>용의 도서</u> |
| <u><신 설></u>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
| |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
| | 우에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
| |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 |
| | 반, 영상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 |
| | 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
| | 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 |
| | 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 |
| | 한 전자책(이하 "전자책"이라 |
| | 한다)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
| |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 |
| | 는 경우에는 전자책으로 보지 |

① 학교에서는 <u>국가가 저작권을</u>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 <u>정하거나 인정한</u>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교과용 도서의 <u>범위·저작·</u> <u>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u>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신 설>

| <u>아니한다.</u> |
|------------------------|
| ③ 제1항에 따른 |
| |
| |
| 다만, 교육 |
| 부장관이 지정하는 교과용 도서 |
| 의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 |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
| 따른 전자책을 사용함으로써 교 |
| 과서 또는 지도서의 사용을 대 |
| <u>신할 수 있다.</u> |
| <u>④</u> <u>저작·검정·</u> |
| 인정·발행·공급·선정 |
| |
| |
| |
| |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교육 자료"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

어

-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 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 자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